

'98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심사보고서

1997. 12. 4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18일

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정기회

. 제2차 내무위원회(1997. 12. 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이유

농촌진흥원청사 신축이전 부지내에 차고 및 시험실의 신축에 따른 '98년도
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<재산의 취득>

○ 농촌진흥원 시험실 및 차고신축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77-1(농촌진흥원 이전신축부지내)
- 규 묘 : 1,281㎡(시험시설 1,016㎡, 차고 265㎡)
- 기 간 : '98상반기
- 총사업비 : 1,028,184천원(국비 489,092천원, 도비 539,092천원)

※ 이전신축에 따른 경위

- 부지 매입의 전(도의회 의결 '93. 12. 16) : 231,406㎡
- 본관·연구동 건물신축(" " '94. 12. 30) : 10,248㎡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건 영)

충청북도 '98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

이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'98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
코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가공 및 분석등을 위하여 1,016㎡ 시험시설
과 차량관리를 위한 265㎡ 차고를 농촌진흥원 이전 부지내에 신축하는
것으로 이 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
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'98공유재산관리계획(안)